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3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안태준 · 정준호 · 문진석

김영진 · 조정식 · 염태영

이정문 · 이연희 · 김정호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원, 치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 ----- ----- ----- ----- ----- ----- ----- ----- ----- ----- <u>. 다만,</u> <u>입원, 치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